

현행	개정 (안)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u>1회에 한하여</u>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u>명예퇴직</u>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u>조례 또는 규칙으로</u>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⑧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u>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u>재직기간중에</u>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u>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u>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u>조례로</u>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⑨(현행 제8항과 같음)</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u>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3. 9.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2월 2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임사회) 제1차 위원회(2000년 3월 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추진감)

- 가. 개정이유
  -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공포(건설교통부령 제209호, '99. 9. 2일자 관보 제14296호)와 관련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개정함(안 조례명)
  - 현행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 개정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함(안 제2조)
  -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개정함(안 제4조)
  - ※ 변상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20%(법 제80조의2, '99. 2. 8 개정)
  - 종전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00%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
-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8조)
-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함(안 제9조)
-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개정함(안 제11조)
  - <개정내용>
    - 20M 이상인 도로는 시 수입 →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는 시 수입
    - 20M 이하인 도로는 구 수입 → 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는 구 수입
  - <적용시기>
    -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
    - ※ 서울특별시도노선인정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9-252호, '99. 3. 31)
      - 293개 노선, 연장 1,119.840M
- 변압탑·무선전화기지국·우체통·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함(안 별표 제2호)
  - 점용료 : 2,000원(1개당 1년 단위)
-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비고 제4호)
  -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본안은 '99년 2월 도로법 개정, '99년 6월 도로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조명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안으로서 그 동안 구청에서 관리하여 오던 도로가 시도와 구도로 구분 관리하되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9년 9월 제66회 임시회시 도로 폭과 관계없이 시도와 구도로를 구분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한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하는 조례는 전문 11조로서 그 내용은 조례명을 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2조(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부터 10호까지 규정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며,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는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6조2(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하는 안이며,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자로부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로점용을 한 경우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는 안이며,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지방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 8%의 이자를 가산 납부케 하되 지방세법 제41조에 해당되는 자는 분할납부를 하게 하며 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는 도로점용을 2개 연도 이상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때 법시행령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별표3에 의거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연간 10% 이상 증가한 때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는 규정을 정한 것이며,

제7조(점용료의 감면)는 법 제41조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등과 구청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는 감면토록 하는 안이며,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는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과한 날부터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하여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의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는 점용료징수액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 내용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또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징수한 점용료중 사용기간 외에 점용료를 반환하며 또한 과오납된 점용료나 변상금은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는 규정이며,

제10조(수수료의 징수)는 법 제40조(도로의 점용)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수수료 납부사항과 감면에 관한 규정이며,

제11조(세입 및 징수교부금)는 서울시장의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구에서 징수한 금액은 시에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의 30/100%를 교부금으로 교부받는다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본 안은 법률의 개정 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이나 상위 조례에 중복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공포(건설교통부령 제209호, '99. 9. 2자 관보 제14296호)와 관련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안 조례명)

- 현행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 개정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나.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함(안 제2조)

- 광고탑, 광고판, 기타 외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개정함(안 제4조)

- ※ 변상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20%(법 제80조의2, '99. 2. 8 개정)
- 중전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00%

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개정함(안 제11조)

(1) 개정내용

- 20M 이상인 도로는 시 수입 →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는 시 수입
- 20M 이하인 도로는 구 수입 → 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는 구 수입

(2) 적용시기 :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

- ※ 서울특별시도노선인정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9-252호, '99. 3. 31)  
- 293개 노선, 연장 1,119.840M

- 아. 변압탑·무선전화기지국·우체통·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함(안 별표 제2호)
  - 점용료 : 2,000원(1개당 1년 단위)

- 자.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비고 제4호)
  -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

###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도로법·영·시행규칙 및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등 관계조항 별첨
- 관련근거 : 도로법 제40조, 동시행령 제24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대하여는 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를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26조의4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위 이를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구청장이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구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①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에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교부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받는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의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개	1 년	1,35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합,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터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0
	공중전화				54,200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전력구, 작업구(맨홀),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m	1년	850
		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1,750
		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3,500
		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5,250
		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7,000
		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8,750
		직경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3,100
		직경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21,850
		직경 3.0미터 초과			30,600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미터 이하
	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2,600		
	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5,200		
	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7,850		
	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0,450		
	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3,100		
	직경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9,650		
	직경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32,750		
	직경 3.0미터 초과		45,850		



점용물의 종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 포함)·사설안내표지·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 포함)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 일	300
		기타		1 년	88,400
	사 설 안 내 표 지 판		1 개	1 년	73,650
	현 수 막		표시면적 1㎡	1 일	300
	아 취	도로횡단	점용면적 (1㎡)	1 년	176,800
기 타		88,4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 일	300	
	기 타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의 점용물
  - 나. 위 표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설치한 것” 이외의 점용물
  -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10.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감액한다.
11.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 총액이 연 7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700,000원으로 한다.
12.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